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인촌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5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914호, 2025.4.8.공포, 2025.10.9.시행)됨에 따라,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절차·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발계획 사전협의 대상, 절차 및 기준 등

법률 위임사항 마련

- 개발계획 사전 협의대상 및 절차·기준 마련(안 제30조의2 신설)
 - 사전협의 대상 및 <별표1>(안 제1항)
 - 사전협의 절차·기준(안 제2항 내지 제4항)
- 개발계획 사전 협의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(안 제30조의3 신설)

나.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

- 부동산유산의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현행화(안 제8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외의 시설물인 경우”를 “외의 경우”로, “시설물 면적”을 “시설물 등 면적”으로 한다.

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대상 및 절차·기준 등)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
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(이하 “계획수립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개발계획을 확정·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개발계획자료 일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협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개발계획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경관관리 등에

미치는 부정적 영향 여부

2.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제1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

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등

제30조의3(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

경) 법 제38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

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

다.

1. 사업 시행기간을 180일 범위에서 변경

2. 사업비의 변경

3. 계산 착오, 오기, 누락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

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

4.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

5.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

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

6.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·연면적 또는

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

제37조 중 “별표”를 “별표 2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(제30조의2제1항 관련)	
구분	대상 개발계획
1.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계획	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(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계획은 제외한다)
	나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제6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등
	다. 「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및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 등
	라.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등
	마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
	바.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도시숲과 관련된 개발계획
	사.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등
	아.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세부계획
	자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
	차. 「도시철도법」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(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로 한정한다)
	카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
	타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
	파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(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의 장이 결정·공고하는 입지선정계획으로 한정한다)
	하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(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으로 한정한다)
	거.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제22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
	너.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
	더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
	러.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댐

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(이하 “계획수립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개발계획을 확정·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개발계획자료 일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협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개발계획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경관관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여부
2.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제1항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등

제30조의3(근현대문화유산지구)

서의 개발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) 법 제38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사업 시행기간을 180일 범위에서 변경
2. 사업비의 변경
3. 계산 착오, 오기, 누락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
4.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
5.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
6.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·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

제37조(과태료) -----

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.	----- ----- <u>별표 2</u>-----.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908